

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4. 12. 31.>

수당기준표(제12조제1항제2호관련)

구 분		지급액
위 원	중앙선거관리위원회	150,000원
	시·도선거관리위원회	120,000원
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	100,000원
	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	80,000원
위 측 직 원	간사·서기	40,000원
	투표관리관	90,000원
	사전투표관리관	90,000원
	투표사무원	90,000원
	사전투표사무원	90,000원
	개표사무원	75,000원